

'05. 12. 23(금)  
제245회 정례회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  
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  
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審 査 報 告 書

2005. 12. 23.  
제245회 정례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2월 5일
- 회부일자 : 2005년 12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2. 23 :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신설 등 중선거구제에 따라 시·군의회의원정수와 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조례제정의 개정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조례”로 개정

-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조정(안 제2조)
  - 현행 155명을 ⇒ 131명으로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 제3조)
  - 총 150개소를 ⇒ 37개소로
    - 2인 선거구 : 7개소
    - 3인 선거구 : 20개소
    - 4인 선거구 : 10개소

###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가. 조례 개정이유

-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 이는 지난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부터 실시하는 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의 도입에 따라 시·군의원 총정수가 감축되어 시·군별 의원정수와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시·군의원 정수는 동법 제23조에서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약칭함)가 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하되 동법 제26조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집행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지난 9월 23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이 없어 이를 도지사안으로 확정하여 12월 5일 도의회에 제출하였음.

## 나. 의원정수 책정

- 시·도별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바 우리 도의 시·군의원 총정수는 131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155명에서 15.5%인 24명이 감원된 것으로 중선거구제 도입과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된 조치로 판단됨.
- 그리고 시·군별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내에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되 최소 정수는 7인으로 하며,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을 비례대표 정수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책정 기본방향을 현의원수 보다 증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하에 인구비율 30%와 읍·면·동 비율 70%를 적용하되, 읍·면수가 9개 이상인 군에 1명을 추가배정하여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시·군별 의원정수를 책정하였음.
- 그러나 개정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군별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더라도 의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는 바 이는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등 법적인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 선거구 획정

- 시·군의원 선거구의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인구·행정구역·地勢·교통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고,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며 하나의 읍·면·동은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4인 이상을 선출하는 때에는 분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중선거구제 제도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1개 선거구당 의원 4명까지는 분구

하지 아니하고 5명 이상부터 분구하기로 하며, 도·농통합 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를 읍·면과 동으로 분리하고, 청원군과 옥천군은 인구수와 읍면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선거구를 확정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조례안 별표2와 같이 37개의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확정하였음.

- 선거구 획정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적절히 반영하여 투표권에 대한 평등성과 경쟁자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것임.
- 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6조에서 시·군의원 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조건을 고려하되, 하나의 도의원 지역구 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이 있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바 일부 4인선거구의 경우에는 지세·교통·생활권역과 도의원선거구와 시군의원선거구가 동일한 점 등 다소 쟁점이 되고 있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선거구획정 기준 중 청원군과 옥천군은 인구수와 읍·면·동수의 편차를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적정한 선거구를 확정하였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임.

## 라. 기타사항

-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선거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칙 제4조에서 도의회는 선거일전 5월(12월 31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하며, 도의회가 기한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가 15일 이내에 선거구획정 조정조례안을 제출하고, 도의회는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 기한까지도 조례안을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사항으로 보고.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수정안 요지

#### 수정 이유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세, 교통, 생활권역을 고려하고,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선거구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4인선거구 10개소중 공직선거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분구가 불가능한 중평군 “가”선거구와 면으로만 이루어진 옥천군 “나” 선거구는 지역의 특수성 및 인구편차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 분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별표 2의 청주시 상당구의 선거구역중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을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과 “율량·사천동, 오근장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청주시 흥덕구의 선거구역중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을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과 “복대제1동, 봉명제1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충주시 선거구역중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을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과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제천시 선거구역중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 청전동”을 “고암.모산동, 청전동”과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보은군 선거구역중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을 “보은읍”과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영동군 선거구역중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을 “영동읍”과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괴산군 선거구역중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을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과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음성군 선거구역중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을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과 “대소면, 삼성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7. 심사 결과 : 수정안 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5. 12. 23

제안자 : 김정복의원 외

## □ 수정 이유

- 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세, 교통, 생활권역을 고려하고,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선거구 구분이 필요함에 따라 4인선거구 10개소중 공직선거법 제26조 제3항에 의거 분구가 불가능한 증평군 “가”선거구와 면으로만 이루어진 옥천군 “나”선거구는 지역의 특수성 및 인구편차 등을 감안하여 선거구 분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구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 □ 수정 주요내용

- 안 별표 2의 청주시 상당구의 선거구역중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을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과 “율량·사천동, 오근장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청주시 흥덕구의 선거구역중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을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과 “복대제1동, 봉명제1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충주시 선거구역중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을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과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제천시 선거구역중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 청전동"을 "고암·모산동, 청전동"과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보은군 선거구역중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을 "보은읍"과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영동군 선거구역중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을 "영동읍"과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괴산군 선거구역중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을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과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안 별표 2의 음성군 선거구역중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을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과 "대소면, 삼성면"으로 하며, 지역구 선출 의원정수 "4명"을 각각 "2명"으로 함.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충청북도	계	114	13읍 90면 50동
청주시	계	23	29동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계	10	13동
	청주시 “가”선거구	2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청주시 “나”선거구	2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주시 “다”선거구	3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청주시 “라”선거구	3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청주시 홍덕구	홍덕구계	13	16동
	청주시 “마”선거구	3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 “바”선거구	3	산·미·분장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청주시 “사”선거구	2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청주시 “아”선거구	2	복대제1동, 봉명제1동
	청주시 “자”선거구	3	복대제2동, 가경동, 강서제1동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충주시	계	17	1읍 12면 12동
	충주시 “가”선거구	3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
	충주시 “나”선거구	2	신니면, 노은면, 양성면, 가금면
	충주시 “다”선거구	2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충주시 “라”선거구	2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
	충주시 “마”선거구	3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충주시 “바”선거구	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용산동
	충주시 “사”선거구	2	연수동, 목행.용탄동
제천시	계	11	1읍 7면 9동
	제천시 “가”선거구	2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제천시 “나”선거구	2	고암.모산동, 청전동
	제천시 “다”선거구	2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
	제천시 “라”선거구	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제천시 “마”선거구	3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원 정수	선거구역
청원군	<b>계</b>	<b>10</b>	<b>1읍 13면</b>
	청원군 “가”선거구	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청원군 “나”선거구	2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청원군 “다”선거구	3	내수읍, 오창면, 북이면
	청원군 “라”선거구	2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보은군	<b>계</b>	<b>7</b>	<b>1읍 10면</b>
	보은군 “가”선거구	2	보은읍
	보은군 “나”선거구	2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보은군 “다”선거구	3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옥천군	<b>계</b>	<b>7</b>	<b>1읍 8면</b>
	옥천군 “가”선거구	3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옥천군 “나”선거구	4	동이면, 이원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영동군	계	7	1읍 10면
	영동군 “가”선거구	2	영동읍
	영동군 “나”선거구	2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영동군 “다”선거구	3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증평군	계	6	1읍 1면
	증평군 “가”선거구	4	증평읍
	증평군 “나”선거구	2	도안면
진천군	계	6	1읍 6면
	진천군 “가”선거구	3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진천군 “나”선거구	3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괴산군	계	7	1읍 10면
	괴산군 “가”선거구	2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괴산군 “나”선거구	2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괴산군 “다”선거구	3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음성군	계	7	2읍 7면
	음성군 “가”선거구	3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음성군 “나”선거구	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음성군 “다”선거구	2	대소면, 삼성면
단양군	계	6	2읍 6면
	단양군 “가”선거구	3	단양읍, 대강면, 적성면, 단성면,
	단양군 “나”선거구	3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개 정 안				수 정 안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선의정수 지구출원수	선거구역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선의정수 지구출원수	선거구역
충청북도	계	114	13읍 90면 50동	충청북도	계	114	13읍 90면 50동
청주시	계	23	29동	청주시	계	23	29동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계	10	13동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계	10	13동
	청주시 “가”선거구	4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주시 “가”선거구	2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청주시 “나”선거구	3	(생략)		청주시 “나”선거구	2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주시 “다”선거구	3	(생략)		청주시 “다”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청주시 “라”선거구	3	(생략)		청주시 “라”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청주시 홍덕구	홍덕구 계	13	16동	청주시 홍덕구	홍덕구계	13	16동
	청주시 “라”선거구	3	(생략)		청주시 “라”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청주시 “마”선거구	3	(생략)		청주시 “마”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청주시 “바”선거구	4	운천·신봉동, 복대제1동, 봉명제1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청주시 “바”선거구	2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청주시 “사”선거구	3	(생략)		청주시 “사”선거구	2	복대제1동, 봉명제1동
청주시 “자”선거구	3	(생략)	청주시 “자”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선의정수 지구출원수	선거구역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선의정수 지구출원수	선거구역
충주시	계	17	1읍 12면 12동	충주시	계	17	1읍 12면 12동
	충주시 “가”선거구	3	(생 략)		충주시 “가”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충주시 “나”선거구	2	(생 략)		충주시 “나”선거구	2	(개정안과 같음)
	충주시 “다”선거구	4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		충주시 “다”선거구	2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 암.직동
	충주시 “라”선거구	3	(생 략)		충주시 “라”선거구	2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
	충주시 “마”선거구	3	(생 략)		충주시 “마”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충주시 “바”선거구	2	(생 략)		충주시 “바”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제천시	계	11	1읍 7명 9동	제천시	계	11	1읍 7명 9동
	제천시 “가”선거구	2	(생 략)		제천시 “가”선거구	2	(개정안과 같음)
	제천시 “나”선거구	4	고암.모산동, 중앙.의림. 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 청전동		제천시 “나”선거구	2	고암.모산동, 청전동
	제천시 “다”선거구	2	(생 략)		제천시 “다”선거구	2	중앙.의림.명동, 서부. 영천동, 용두동
	제천시 “라”선거구	3	(생 략)		제천시 “라”선거구	2	(개정안과 같음)
보은군	계	7	1읍 10면	보은군	계	7	1읍 10면
	보은군 “가” 선거구	4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보은군 “가” 선거구	2	보은읍
	보은군 “나” 선거구	3	(생 략)		보은군 “나” 선거구	2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청원군		(생 략)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선의정수 지구출원수	선거구역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선의정수 지구출원수	선거구역
옥천군			(생략)				(개정안과 같음)
영동군	계	7	1읍 10면	영동군	계	7	1읍 10면
	영동군“가” 선거구	4	영동읍,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영동군“가” 선거구	2	영동읍
	영동군“나” 선거구	3	(생략)		영동군“나” 선거구	2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영동군“다” 선거구	3	(생략)	영동군“다” 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증평군			(생략)	증평군			(개정안과 같음)
진천군			(생략)	진천군			(개정안과 같음)
괴산군	계	7	1읍 10면	괴산군	계	7	1읍 10면
	괴산군“가” 선거구	4	괴산읍,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칠성면, 소수면, 불정면		괴산군“가” 선거구	2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괴산군“나” 선거구	3	(생략)		괴산군“나” 선거구	2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괴산군“다” 선거구	3	(생략)	괴산군“다” 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음성군	계	7	2읍 7면	음성군	계	7	2읍 7면
	음성군“가” 선거구	3	(생략)		음성군“가” 선거구	3	(개정안과 같음)
	음성군“나” 선거구	4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음성군“나” 선거구	2	금왕읍, 생극면, 감곡면
음성군“다” 선거구	2	대소면, 삼성면	음성군“다” 선거구	2	대소면, 삼성면		
단양군			(생략)	단양군			(개정안과 같음)

##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및 시·군 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선출된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시·군의회의 의원 정수

구 분 시군별	의원정수			비 고
	계	비례대표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정수	
계	131	17	114	
청 주 시	26	3	23	
충 주 시	19	2	17	
제 천 시	13	2	11	
청 원 군	12	2	10	
보 은 군	8	1	7	
옥 천 군	8	1	7	
영 동 군	8	1	7	
증 평 군	7	1	6	
진 천 군	7	1	6	
괴 산 군	8	1	7	
음 성 군	8	1	7	
단 양 군	7	1	6	

『별표 2』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충청북도	계	114	13읍 90면 50동
청주시	계	23	29동
청주시 상당구	상당구계	10	13동
	청주시 “가”선거구	2	중앙동, 우암동, 내덕제1동, 내덕제2동
	청주시 “나”선거구	2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청주시 “다”선거구	3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청주시 “라”선거구	3	영운동, 용암제1동, 용암제2동
청주시 홍덕구	홍덕구계	13	16동
	청주시 “마”선거구	3	사직제1동, 사직제2동, 사창동, 모충동, 성화·개신·죽림동
	청주시 “바”선거구	3	산·미·분장동, 수곡제1동, 수곡제2동,
	청주시 “사”선거구	2	운천·신봉동, 봉명제2·송정동, 강서제2동
	청주시 “아”선거구	2	복대제1동, 봉명제1동
	청주시 “자”선거구	3	복대제2동, 가경동, 강서제1동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충주시	계	17	1읍 12면 12동
	충주시 “가”선거구	3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이류면
	충주시 “나”선거구	2	신니면, 노은면, 양성면, 가금면
	충주시 “다”선거구	2	성내.충인동, 지현동, 문화동, 호암.직동
	충주시 “라”선거구	2	달천동, 봉방동, 칠금.금능동
	충주시 “마”선거구	3	금가면, 동량면, 산척면, 엄정면, 소태면
	충주시 “바”선거구	3	교현.안림동, 교현2동, 용산동
	충주시 “사”선거구	2	연수동, 목행.용탄동
제천시	계	11	1읍 7면 9동
	제천시 “가”선거구	2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제천시 “나”선거구	2	고암.모산동, 청전동
	제천시 “다”선거구	2	중앙.의림.명동, 서부.영천동, 용두동
	제천시 “라”선거구	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제천시 “마”선거구	3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청원군	계	10	1읍 13면
	청원군 “가”선거구	3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청원군 “나”선거구	2	남이면, 현도면, 부용면
	청원군 “다”선거구	3	내수읍, 오창면, 북이면
	청원군 “라”선거구	2	강내면, 강외면, 옥산면
보은군	계	7	1읍 10면
	보은군 “가”선거구	2	보은읍
	보은군 “나”선거구	2	내속리면, 외속리면, 마로면, 탄부면
	보은군 “다”선거구	3	삼승면,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
옥천군	계	7	1읍 8면
	옥천군 “가”선거구	3	옥천읍, 군서면, 군북면
	옥천군 “나”선거구	4	동이면, 이원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영동군	계	7	1읍 10면
	영동군 “가”선거구	2	영동읍
	영동군 “나”선거구	2	양강면, 용화면, 학산면, 양산면
	영동군 “다”선거구	3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십천면
증평군	계	6	1읍 1면
	증평군 “가”선거구	4	증평읍
	증평군 “나”선거구	2	도안면
진천군	계	6	1읍 6면
	진천군 “가”선거구	3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진천군 “나”선거구	3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괴산군	계	7	1읍 10면
	괴산군 “가”선거구	2	괴산읍, 칠성면, 소수면
	괴산군 “나”선거구	2	감물면, 장연면, 연풍면, 불정면
	괴산군 “다”선거구	3	문광면, 청천면, 청안면, 사리면

시·군별	지역구명칭	지역구 선출의 원정수	선거구역
음성군	계	7	2읍 7면
	음성군 “가”선거구	3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음성군 “나”선거구	2	금왕읍, 생곡면, 감곡면
	음성군 “다”선거구	2	대소면, 삼성면
단양군	계	6	2읍 6면
	단양군 “가”선거구	3	단양읍, 대강면, 적성면, 단성면,
	단양군 “나”선거구	3	매포읍, 가곡면, 영춘면, 어상천면

## 관계 법령 발췌

### □ 공직선거법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총정수는 별표 3과 같이 하며,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당해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

②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①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시·도의원지역구”라 한다)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을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1인으로 하며, 그 시·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확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